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92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유상범 · 강명구 · 김선교
김은혜 · 구자근 · 곽규택
박준태 · 장동혁 · 조배숙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1. · 2. · 3. (생 략)	1. · 2.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u> <u>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u> <u>한 사람(군무원으로 정년</u> <u>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u> <u>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u> <u>은 「공무원연금법」 제25</u> <u>조를 준용한다.</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